

조선후기 東萊府 沙川面(沙上面) 洞案 연구를 위한 예비적 검토*

진 상 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洞案의 전승 양상
- III. 洞契의 결성과 兩立 및 통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조선후기 東萊府 沙川面(沙上面)은 양반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변방의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에는 현재 동안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다수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에 작성된 이 지역 동안들의 작성 및 추록 시기를 추정하고 여기에 보이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들을 밝혀내었다. 임진왜란 직후 사천면에서는 지역 엘리트들이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해 면 단위의 동계를 결성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다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1678년(숙종 4년) 동래부사가 주도하는 향약 체계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1753년(영조 29년) ‘舊洞契’라 자칭하는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6188)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 / myneo@hanmail.net

또 하나의 동계가 결성되어 향약 계열의 동계와 양립하며 임진왜란 직후 지역 엘리트들이 만든 동계의 정통성을 이었음을 내세웠다. 향약 계열 동계는 계원들의 특권과 門地의 차이를 점차 강조해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이와 양립한 동계는 상호 부조와 경제적 의무 외에는 여타의 특권 의식이나 문지의 차별 등이 보이지 않는다.

향약 계열의 동계와 양립한 동계는 19세기 초에 新舊 사또의 迎送 행사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자 그 재원을 계원들에게 고루 利殖하여 얻은 수익을 계의 운영비 뿐 아니라 面의 각종 경비에 사용하였다. 그러다 비축한 재원이 많아지자 이의 운영을 둘러싸고 계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마침내 1872년(고종 9년)에 재산을 모두 향약 계열의 동계에 넘기고 이와 병합하였다. 이렇게 통합된 동계는 예전 향약 계열의 그것과 달리 개방적인 성격을 띠었고, 계원들의 특권 의식이나 문지에 따른 차별도 보이지 않았으며, 비록 面首의 관할 하에 있지만 상대적 독자성을 견지하고 있었다.

상이한 두 동계의 양립과 통합의 역사를 단순히 향약 계열 동계와 면의 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계의 관계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조선 후기 주변부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양상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접근을 위한 예비적 검토이다.

주제어 : 洞案, 洞契, 鄉案, 鄉約, 武任, 鄉班, 面里制, 民村, 東萊府, 沙川面, 沙上面

I. 머리말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후기에 동래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변방의 군사요지였다. 동래부에 속한 사천면은 읍치와 멀리 떨어져 남해와 낙동강에 연해 있는 변두리 지역으로서 양반 가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곳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동안과 호적 중초를 비롯한 조선후기 고문서들이 다수 전승되고 있다. 이 중 임진왜란 직후부터 300여 년에 걸쳐 작성되고 개수된 다양한 형태의 동안들이 전승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놀라운 기록문화는 최근 남

해안 일원에서 찾아지는 일반적 현상이다.¹⁾ 이 연구는 변방 민촌 지역 사회의 실상과 더불어 기록문화의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을 단위의 향안과 향약, 마을 단위의 동계와 동안 및 동약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²⁾ 따라서 동안에 대한 이 작업은 단지 하나의 사례를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역설한 바와 같이 변방인 동래부 중에서도 가장 주변적인 지역으로서 사실상 양반 가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천면에 무려 300여 년에 걸쳐 동안(실제는 面案임)을 작성하여 이 지역 엘리트들의 명단을 수록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³⁾ 더욱이 이러한 사례는 최근 밝혀진 남해안 일대 기록문화의 광범위한 확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다만 이 지역 동안들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재 무려 11종 이상의 동안들이 남아 있는데 수록 내용의 단조로움과 지역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현존하는 동안들의 작성 시기를 추정해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의 동안이 작성되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

-
- 1) 이훈상, 「19세기 중엽 이후 거제 통영 지역의 별신굿 연행과 기록 문화 전통의 창출」, 『진단학보』 127, 2016.
 - 2) 조선시대 향약과 동계에 관한 연구들은 사족층의 신분지배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다음의 연구들은 19세기 이후의 동계에서 보이는 자율성이나 자치적 성격 또는 상호계약적인 경제적 이해의 결속이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김필동, 『한국사회조직사연구』, 일조각, 1992. 정승진, 『羅州 草洞洞契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대동문화연구』 45, 200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 계 조직과 규약의 ‘契約’적 성격」, 『고문서연구』 42, 2013. 김혁, 「18~19세기 鄕約의 실권과 사회관계의 변화」, 『한국문화』 66, 2014. 손병규, 「18~19세기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적 납세조직의 활동」, 『한국사학보』 65, 2016. 이용기,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 128, 2017.
 - 3) 실제는 사천면의 面案과 面契이지만 그들 자신들이 이를 동안과 동계로 호칭하여 통용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동안이라 칭하였다.

이에 새로운 동안이 작성되어 이와 병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동안이 만들어져 이들과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곧 지역적 특성인 동시에 이 지역 엘리트들이 갈등과 불협화음을 딛고 다시 통합해 온 노력을 보여준다. 요컨대 300여 년에 걸친 이러한 분화와 통합 및 지속성은 실로 복잡하고 미묘한 긴장과 갈등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지역사회의 복원력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방대한 자료의 분량과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民層의 장기간의 역사라는 점에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이렇다 할 역동성을 찾기 어려운 이 지역의 이러한 장기 지속성은, 향안이나 동안에 대한 선행 연구의 대상 지역에서도 찾기 어려우며, 같은 동래부 내에서도 경상좌수영이 위치한 南村面이나 향반들이 다수 세거한 東下面의 동안 및 그 전승 양상과도 대조가 된다.⁴⁾ 사천면 지역의 엘리트 중 대표적인 집안은 몇몇 무임 가게에 불과하며 향반 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에서 지역 엘리트들의 성명을 수록한 동안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개수된 까닭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계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이 작업을 주도한 부류들의 사회적 위상은 어떠하며 이들과 국가 권력 및 읍치의 주도세력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알력과 갈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또 봉합되었을까?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이 지역 동안들의 작성 시기를 추적하여 풀어가려 한다. 주변부는 역사 연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주변부도 그 층위가 다양하다는 사실이 최근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그 같은 새로운 층위를 밝히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것은 조선후기의 주

4) 鄭景柱,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에 대하여」, 『港都釜山』 10, 1994, 245~268쪽. 姜大敏, 「東萊府 南村面 古文書 解題」, 『港都釜山』 11, 1994, 223~317쪽.

변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현대 이후 변동 속에서 이 같은 지역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현격한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洞案의 전승 양상

한반도의 동남부 최말단에 위치한 동래부는 조선후기에 변경의 군사적 외교적 거점으로서 읍내면을 중심으로 동면, 서면, 남촌면, 북면, 동평면, 사천면 등 모두 7개의 면으로 구성되었다.⁵⁾ 1678년(숙종 4년)에는 사천면의 신초량리에 왜관이 설치되었으며,⁶⁾ 19세기 초에는 사천면의 상단과 하단이 각기 분리 독립하여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되었다.⁷⁾ 이 분리 과정에서 사천면의 동계(실제는 面契입) 조직이 사상면으로 이어져 오늘날 사상구의 ‘戀舊祭壇保存會’란 단체에 이르고 있다.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읍지인 1740년(영조 16년)에 작성된 『동래부지』에 의하면 당시 동래부의 총호수가 5,641호였는데 이 중 사천면은 726호로 동래부 전체 호수의 13%에 불과하지만 지역은 광대하였다.⁹⁾ 그러나 해안지역에는 왜관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수변

5) 이 중 사천면은 上端과 下端으로 나뉘어져 상단에는 주례리, 모라리, 쾌내리, 덕포리, 장문리, 엄광리 등 6개의 리가 있었고 하단에는 신초량리, 구조량리, 대치리, 목장리, 감천리, 독지리, 장림리, 서평리, 다대리 등 9개의 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래사료』 2, 『동래부지』, 여강출판사, 1989, 10~13쪽.

6) 최차호, 『초량왜관』, 어드북스, 2014, 83쪽.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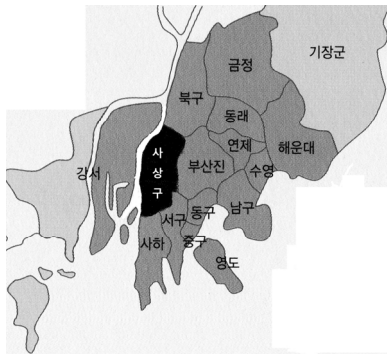
8) ‘연구재단보존회’는 조선후기 사천면 동계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상구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는 祭壇을 쾌범동 산 12번지에 조성하여 임진왜란 직후 동계를 처음 결성하였다고 전해지는 9인에 대한 제사를 매년 봉행하고 있다.

9) 사천면은 동래부의 서남부 해안으로부터 낙동강 하구에 걸치는 외곽 수변 지역으로서 현재 부산광역시의 중구와 서구 및 사하구, 사상구 등 모두 4개의 구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도 향반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하도록 만들었다. 이 동안들이 계승되어 온 사상면은 낙동강 수운의 주노선에서도 벗어나 있었다.¹⁰⁾ 강 하구에 퇴적물이 쌓여 생겨난 하중도의 농토를 경작하는 주민들이 다수였는데 홍수가 나면 불어난 강물에 농작물이 휩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¹¹⁾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향반 가문이 거주하지 않았던 곳에는 지역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책자나 문서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30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개수된 다양한 형태의 동안들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 지역의 동계 관련 자료들은 동안과 그 절목 및 「동래부 사천 선생안」 등 모두 세 종류 열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1> 부산광역시 행정지도



- 10) 사천면이 연한 낙동강 하구의 물길이 현재는 하나로 합쳐져 흐르지만 당시에는 경상도 내륙에서 흘러내려온 강물이 삼랑진을 지나 구포 앞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 흘렀는데 그 본류는 사천면 상단 즉 사상면의 맞은편인 김해 쪽이었다.
- 11) 진상원, 「19세기 동래부 『사상면 호적중초』의 내용과 사상면 지역사회의 성격」, 『향도부산』 34, 2017, 259~276쪽; 「19세기 말 民村 지역 주민들의 혼인 연망과 종족화 양상」, 『고문서연구』 52, 2018, 235~266쪽.

<표 1> 동계 관련 문서들

종류	연번	제명	작성 시기	비고
洞案	1	沙川面 舊洞契 座目	1612년, 광해군 4년 1623년, 인조 1년 1629년, 인조 7년	■
	2	洞中座目	1674년, 현종 15년	■
	3	沙川洞案	1678년, 숙종 4년	
	4	洞案	1752년, 영조 28년	■
	5	洞中改案	1753년, 영조 29년 6월	
	6	大洞案	1759년, 영조 35년 4월	
	7	舊洞中改案	1778년, 정조 2년 3월	
	8	洞案	1804년, 순조 4년 10월	
	9	戀舊契 新座目	1810년, 순조 10년 8월	
	10	大洞新案	1892년, 고종 29년	■
	11	戀舊契 重修 座案	1922년 4월	
節目	12	沙川 鄉約廳 節目	1724년, 경종 4년	■
	13	沙上面 新定完議 節目	1846년, 헌종 12년 6월	
	14	戀舊契新節目	1863년, 철종 14년 11월 1872년, 고종 9년 10월	■
先生案	15	東萊 沙川 先生案	1978년 ~ 1995년	

위에 제시한 동계 관련 문서들은 동안 11점, 절목 3점, 선생안 1점 등 모두 15점이다. 이 중 작성 연대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비고란에 ■표를 해 놓은 6점에 불과하다. 나머지 9점은 간지만 표기되어 있거나 그마저 없다. 이처럼 그 작성 시기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9점은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준호구와 족보 자료 등을 통하여 작성 시기를 밝혀놓았다.¹²⁾

12) 연번 3. 「沙川洞案」:冒頭에 「동래 향약 중수기」를 첨부해 놓고 그 뒤에 동중 좌목을 기재해 둔 것으로 보아 「동래 향약 중수기」의 작성 시기와 동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수기의 말미에 「戊午年 十月에 府史 李馥이 이를 적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

고 이복이란 인물은 1676년(숙종 2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679년(숙종 5년)에 이임하였으므로 이 중수기의 말미에 표기된 무오년은 1678년(숙종 4년)임을 알 수 있다.

연번 5. 『洞中改案』: 최초의 작성 시기를 “癸酉 六月”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 “계유 6월”의 좌목에 ‘趙連弘’이란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현존하는 준호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함안 조씨 사상 문중에서 전승되고 있는 1783년(정조 7년)에 발급된 趙再泰의 준호구에 조재태는 “年四十二 壬戌 父 兼司僕 趙連弘”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조재태는 42세 壬戌生이고 그의 부친이 겸사복 조연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중개안』에 등재되어 있는 조연홍이란 인물은 이 준호구가 작성된 1783년보다 41년 이른 1742년(영조 18년)의 임술년에 조재태란 아들을 두었다. 따라서 이 『동중개안』이 최초로 작성된 “계유 6월”은 1753년(영조 29년)의 6월이라고 생각된다.

연번 5. 『大洞案』: ‘己卯 四月’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庚辰年, 戊子年, 乙丑年, 庚寅年, 壬辰年, 癸巳年, 丙申年, 丁酉年, 戊戌年, 己亥年, 辛丑年, 乙巳年, 丁未年, 戊申年, 庚戌年의 좌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무술년 정월에 ‘趙再泰’란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는 앞서 소개한 함안 조씨 사상 문중에서 전승되고 있는 1783년(정조 7년)의 준호구에 나오는 바로 그 조재태이다. 따라서 그가 1742년(영조 18년) 임술생이므로 이 『대동안』이 처음 작성된 기묘년은 1759년(영조 35년)임이 분명하다.

연번 7. 『舊洞中改案』: 최초로 작성된 것은 戊戌年 三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무술년 3월의 좌목에 성명이 등재된 ‘趙益泰’는 같은 해 12월에 洞契의 所任을 맡았는데 그의 준호구도 함안 조씨 사상 문중에서 전승되고 있다. 1777년(정조 1년)에 발급된 준호구에 그는 “年五十九 己亥生”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는 1719년(숙종 45년)에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동중개안』이 작성된 무술년은 1778년(정조 2년)이다.

연번 8. 『洞案』: 모두에 총 356명에 이르는 다수의 인물들을 작성 시기도 밝히지 않고 등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甲子年 10월의 좌목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에 실린 356명 중 147번째로 등재되어 있는 ‘趙孟泰’의 준호구 역시 함안 조씨 사상 문중에서 전승되고 있다. 1744년(영조 20년)에 작성된 준호구에 따르면 그는 1718년(숙종 44년) 무술년에 출생하였다. 그리고 335번째(趙氏 38명 중 37번째)로 등재된 ‘趙潤郁’의 준호구 역시 함안 조씨 사상 문중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1804년(순조 4년)에 발급된 준호구에 따르면 그는 1782년(정조 6년) 壬寅年에 출생하였다. 또 10번째(조씨 38명중 2번째)로 등재된 ‘趙繼贊’은 함안 조씨 사상 문중의 족보에 1626년(인조 4년)에 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12번째로 등재된 ‘趙弼章’은 앞의 족보에 따르면 1742년(영조 18년)에 출생하여 1794년(정조 18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동안』은 356명 중 335번째로 등재된 조윤옥의 출생 후 첫 甲子年인 1804년에 작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일 신분의 경우 생년순으로 등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동안이 작성된 1804년은 112번째로 등재된 조필장이 이미 사망한 후이므로 이 동안은 1804년에 그 이전의 인물들까지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 소급 한도는 순번 10번째(조씨 38명중 2번째)인 조계찬이 1626년생이므로

이 중 가장 이른 연번 1의 『沙川面 舊洞契 座目』은 1612년(광해군 4년)에 처음 작성된 후 1623년(인조 1년)과 1629년(인조 7년)에 개수되었는데 中軍을 역임한 具鳳祥이 1818년(순조 18년)에 합본한 것이다.¹³⁾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674년(현종 15년)에 작성된 연번 2의 『洞中座目』이다.

최소한 1620년대에 태어난 인물들까지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번 9. 『戀舊契 新座目』: 표지에 ‘庚午 八月’이라고 그 작성 시기가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에 ‘庚午 八月 日 戀舊契 新設座目 序’란 제명의 서문을 수록한 후 당시 연구계원 37명의 성명을 수록하였다. 이 중 34번째로 등재되어 있는 ‘趙潤郁’이란 인물은 함안 조씨 사상 문중에서 전승되고 있는 1803년(순조 3년)의 준호구에 “年二十三 壬寅生”라고 되어 있어 그가 1782년(정조 6년)생이 분명하므로 『戀舊契 新座目』이 처음 작성된 경오년은 1810년(순조 10년)이어야 한다.

연번 11. 『戀舊契 重修 座案』: 표지에 ‘壬戌年 四月’에 작성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때 작성된 서문과 절목을 모두에 수록한 후 契員 158명의 성명과 아울러 이들의 字와 生年 및 居住 里名을 적어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癸酉年과 庚午年 등 각 시기 신입회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표기된 회원들의 거주 리명 가운데 ‘삼락리’, ‘유두리’, ‘괘법리’, ‘학장리’, ‘감전리’ 등이 보이는데 이러한 지명들은 1914년 4월 1일에 일제가 군·면의 통합을 단행하면서 비로소 생겨난 것들이다. 즉 양산군 좌이면에 속했던 소요리와 유두리를 동래부의 사상면에 편입시켜 소요리는 삼락리로, 유두리는 그대로 유두리로 존속시켰다. 또 괘내 창법을 창법리로, 학성 장문평을 학장리로 분리 독립시키고 감동과 서전리를 감전리로 합쳤는데 이러한 리명들이 『戀舊契 重修 座案』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좌안은 1914년 4월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지명들이 1930년대에는 삼락동, 유두동, 괘법동, 학장동, 감전동 등으로 모두 里에서 洞으로 바뀌고 있어 『戀舊契 重修 座案』이 처음 작성된 임술년은 1914년 직후의 임술년인 1922년임이 확실하다.

연번 13. 『沙上面 新定完議 節目』의 표지에 ‘丙午 六月’에 작성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완의의 제명에 사용한 ‘沙上面’이란 지명은 19세기 초에 사천면이 상당과 하단으로 분리되어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각기 독립하면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완의가 작성된 병오년은 1846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번 15. 『東萊 沙川面 先生案』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沙川誌』의 『沙川建置沿革』이란 항목 중 地名條에 “釜山 北區”란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부산 북구는 1978년 2월 15일에 비로소 설치되어 1995년 3월 1일 사상구가 분리 독립하였다. 그러므로 이 『東萊 沙川面 先生案 附沙川誌』는 1978년 2월과 1995년 3월 사이에 편찬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13) 『昌原具氏世譜』 1권, 昌原具氏世譜所, 1981, 210쪽.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총람』, 동아대 석당학술원·한국학연구소, 2009, 42쪽.

연번 3의 「沙川洞案」은 1678년(숙종 4년)에 동래부사가 官주도의 鄕約을 실시하면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하여 1717년(숙종 43년) 정월의 추록자들까지 수록한 것이다.¹⁴⁾ 이 동안부터 그 기재 양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그 이전에는 매 시기마다 동계의 구성원 모두를 동안에 入錄하였지만 이 동안에서부터는 맨 처음 동안을 작성할 때만 구성원 모두의 성명을 수록하고 그 이후는 신규 입록자의 성명만을 추록하였다. 따라서 이후 등장한 동안들의 최초 작

<표 2> 동안의 최초 작성 시기와 추록 시기 1

연번 洞案名 작성 시기 西紀	연번 洞案名 王歷	4	5	6	7
		洞案	洞中改案	大洞案	舊洞中改案
1752	영조28	1,6,7,9			
1753	영조29	3,6,8	6	A	
1754	영조30	10	4		
1755	영조31	3			
1756	영조32	3			
1757	영조33	4			
1758	영조34				
1759	영조35		9	4	B
1760	영조36			3,4,9	
1761	영조37				
1762	영조38		6,9		
1763-1767	영조39-43				
1768	영조44			10,11,12	
1769	영조45			4	
1770	영조46			1,7	
1771	영조47				
1772	영조48			2,4,10	
1773	영조49			6,8	
1774	영조50				
1775	영조51				
1776	영조52			3	
1777	정조1			1	
1778	정조2		C	1,6,윤6	3,7,12
1779	정조3			7,12	
1780	정조4				6,11
1781	정조5			7	
1782	정조6	6			
1783	정조7				
1784	정조8				
1785	정조9	9,10		12	
1786	정조10				D
1787	정조11	12		3,12	
1788	정조12			7,8,9,11	
1789	정조13			2	
1790	정조14			3,4	

* 각 항의 숫자는 처음 작성하거나 추록한 月日.

14) 1678년 9월에 처음 작성되어 1696년 9월과 10월, 1700년 3월, 1707년 3월, 1707년 3월, 1708년 3월, 1710년 11월과 12월, 1711년 10월, 1715년 5월, 1716년 5월과 6월, 11월, 12월, 1717년 정월에 추록하였다.

성 시기와 추록 시기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연번 4, 5, 6, 7 동안들의 최초 작성 시기와 추록 시기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은데 여기에 특이한 현상이 보인다. 예컨대 연번 4의 「洞案」이 1752년(영조 28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757년(영조 33년)까지 거의 연속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연번 5의 「洞中改案」이 1753년(영조 29년)에 새로 작성되어 이와 병존하고 있으며, 또 1759년(영조 35년)에는 연번 6의 「大洞案」이 새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동안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새로운

<표 3> 동안의 최초 작성 시기와 추록 시기 2

작성 시기 西紀	연번 洞案名 王歷	8	9
		洞案	戀舊契 新座目
1804	순조4	10	
1805	순조5		
1806	순조6		
1807	순조7	4	
1808	순조8		
1809	순조9	E	
1810	순조10	4	8
1811	순조11	10	11
1812	순조12		5,9,10
1813	순조13	4,10	9
1814	순조14	4,10	3
1815	순조15	4	
1816	순조16	4,10	
1817	순조17	4,10	
1818	순조18	5,10	6,8
1819	순조19	4,10	
1820	순조20	10	3
1821	순조21	4,10	8
1822	순조22	F	10
1823	순조23		
1824	순조24		8
1825	순조25		

* 각 항의 숫자는 처음 작성하거나 추록한 月일.

동안이 작성되어 이와 병존하며 그러다 또 하나의 새로운 동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한 현상이 19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연번 8, 9의 동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6차례 나타난다.

서로 다른 동안이 병존하였던 기간을 <표 2>와 <표 3>에 A에서 F까지 표기하였다. 이 여섯 개의 각 기간에 동계의 임원을 맡았던 이를 확인하여 같은 시기에 작성된 상이한 동안의 임원이 동일한 인물이면 하

나의 동계가 복수의 동안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서로 다른 동계가 병존하였을 것이다.

각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D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사례 모두 그 임원명이 일치하지 않아 A, B, C 및 E, F의 각 시기에 병립했던 동계들은 서로 다른 조직이었다고 판단된다.¹⁵⁾ 다만 D의 경우는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연번 4. 「동안」에 성씨와 착명만 기재되어 있어 단언할 수 없지만 연번 4. 「동안」과 연번 6. 「대동안」의 동계는 동일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D의 경우를 제외하면 연번 4. 「동안」과 연번 6. 「대동안」 및 연번 8. 「동안」은 서로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고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명을 모두 ‘大洞中’으로 칭하고 있어 동일 조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비해 연번 5. 「동중개안」과 연번 7. 「구동중개안」 및 연번 9. 「연구계신좌목」은 이들 상호간에 시차가 있고, 앞의 연번 4, 6, 8과 각기 병립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舊洞中’으로 칭하여 연번 4, 6, 8의 조직과 구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들 연번 5, 7, 9의 동계도 동일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

<표 4> D시기 각 동안의 임원 비교

연도	왕력	간지	월	(연번) 동안명	계명	유사	공(사)원	소임	비고
1785	정조9	을사	9	(4) 동안	大洞中	李(착명)	趙(착명)		○
1785	정조9	을사	10	(4) 동안	大洞中	李(착명)	趙(착명)		○
1785	정조9	을사	12	(6) 대동안	大洞中	李時斗	趙震泰		○
1787	정조11	정미	3	(6) 대동안	大洞中	金運興	黃淨泰		
1787	정조11	정미	7	(6) 대동안	大洞中	金運興	黃進伯		◎
1787	정조11	정미	12	(4) 동안	大洞中	金(착명)	黃(착명)		◎
1787	정조11	정미	12	(6) 대동안	大洞中	金	黃		◎

15) A, B, C 및 E, F의 경우는 부록에 제시된 <표>를 볼 것

이와 같이 두 계열의 동계가 병존해왔다는 사실은 연번 8. 「동안」에
 입력된 계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연번 8. 「동안」은 다른 동안들과
 달리 첫 장에 당시 계원들의 성명 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계원들의 성명
 도 함께 수록해 놓았다. 그 첫 부분에는 연번 3. 「사천동안」에 입력된 계
 원들의 성명이 그 순서대로 옮겨져 있다. 그 이후에는 뚜렷한 원칙을 찾
 을 수 없지만 연번 4. 「동안」과 연번 6. 「대동안」에 입력된 이들의 성명
 과 더불어 연번 8. 「동안」에만 보이는 새로운 인물들의 성명이 수록되
 어 있다. 그러나 연번 5나 연번 7에 입력된 이들 중에서 연번 4나 연번 6
 에도 입력된 이들의 성명은 수록되어 있지만 연번 5나 연번 7에만 입력
 된 이들의 성명은 찾아볼 수 없다.¹⁶⁾ 다시 말해 연번 8. 「동안」의 첫 부
 분에는 연번 3. 「사천동안」부터 시작해 당시까지 계원들의 성명을 수록
 해 놓았는데 이 중에서 연번 5나 연번 7에만 입력된 이들의 성명이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은 연번 8의 조직이 연번 3, 4, 6의 동계를 계승한 조직이
 지만 연번 5나 연번 7의 동계 조직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두 계열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동안의 외형에서도 드러난다.
 연번 4, 6, 8의 동안들은 모두 푸른색의 두터운 한지로 된 표지에 크기도
 비슷하며 내용의 필체도 비교적 단아하여 관청에서 작성한 先生案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연번 5, 7, 9의 동안들은 私文
 書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연번 5의 「동중개안」은 漢籍에 흔히 사용
 되는 황색 표지로 되어 있고, 연번 7. 「구동중개안」은 일반 한지를 여러

16) * 다음은 연번 5. 「동중개안」에 입력된 이들 중 연번 4. 「동안」이나 연번 6. 「대동안」
 에는 입력되지 않은 이들인데 이들은 모두 연번 8. 「동안」에서 그 성명을 찾아볼 수
 없다. 仇化○, 金斗萬, 金萬英, 金汝俊, 金鎰錫, 李萬雄, 李成札, 李順發, 朴興貴, 方贊
 富, 裊正花, 裊正興, 徐信命, 孫如興, 丁驗素, 趙鳳善, 趙泰海, 崔貴萬.

* 다음은 연번 7. 「구동중개안」에 입력된 이들 중 연번 4. 「동안」이나 연번 6. 「대동
 안」에는 입력되지 않은 이들인데 이들은 모두 연번 8. 「동안」에서 그 성명을 찾아볼
 수 없다. 金戒蓮, 金光潤, 金煩行, 金鳳瑞, 金正福, 李成昌, 文聖福, 方厚章, 邊有根,
 鄭文德, 丁元碩, 趙碩寬, 趙碩敏, 趙進泰, 趙厚泰, 崔相廣, 崔先斗, 崔永恆, 崔致江, 黃
 淨泰.

겹 붙인 흰색 표지로 되어 있으며, 연번 9. 『연구계신좌목』의 표지는 아예 내지와 동일한 흰색 한지로 되어 있는데 이 3종의 동안 모두 앞의 연번 4, 6, 8의 동안들에 비해 크기가 작고 지질도 떨어진다.

<그림 2> 연번 4~9 동안의 사진

<p>연번 4. 동안 (37cm × 28cm)</p>	<p>연번 6. 대동안 (35cm × 29cm)</p>	<p>연번 8. 동안 (37cm × 29cm)</p>
<p>연번 5. 동중개안 (25cm × 20cm)</p>	<p>연번 7. 구동중개안 (29cm × 31cm)</p>	<p>연번 9. 연구계신좌목 (18cm × 31cm)</p>

Ⅲ. 洞契의 결성과 兩立 및 통합

1. 결성

사상면 동안들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앞장 <표 1>의 연번 1인 『사천면 구동계 좌목』이다.[이후 ‘연번’이라 칭하는 것은 모두 앞장 <표 1>의 연번을 뜻한다.] 이 문서의 내지에는 ‘洞中座目’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17세기 초 당시의 명칭은 ‘舊洞契’가 아니라 ‘洞契’였음이 분명하다.¹⁷⁾

이 문서성책은 1612년(광해군 4년)과 1623년(인조 1년) 및 1629년(인조 7년)에 각기 작성한 죄목을 중군을 역임한 具鳳祥이 1818년(순조 18년)에 改衣背貼하여 합본한 것이다. 구봉상(1781년~1856년)은 아래 <표 5>의 연번 16인 仇榮鷺의 후손으로서 19세기 전반에 동래부의 최고위 무임인 중군을 역임하였다. 그의 집안은 무임을 배출해 왔으나 중군을 역임한 이는 그가 유일하다.¹⁸⁾

<표 5> 사천면 구동계 죄목

단위 명

연번	성명	작목			附記			비고
		1612년	1623년	1629년	1612년	1623년	1629년	
1	丁茂成	1			仙			
2	朴碩珍	1			仙			
3	李銀富	1			仙			
4	崔性貴	1			仙			
5	黃晚傑1	1						
6	朴世番	1	1		仙	仙		기병, 3등훈
7	許克良	1	1	1			仙	
8	丁加音石	1	1	1			仙	
9	金連壽	1	1	1				부호군, 3등훈
10	李正全	1	1	1				
11	仇今夫	1			仙			
12	黃仁夫	1	1	1	他		仙	
13	丁目隱全	1	1	1			仙	
14	朴成業		1					
15	黃晚傑2		1	1			仙	
16	仇榮鷺	1	1	1				금군, 3등훈
17	徐時敏	1						

17) 이 문서 성책의 題銘이 비록 ‘沙川面 舊洞契 座目’이지만 ‘舊洞契’란 명칭은 후대에 구봉상이 개의를 매첩 하면서 자신이 살던 시기의 동계와 구별하여 표지에 이러한 제명을 붙였다고 여겨진다.

18) 『昌原具氏世譜』 1권, 昌原具氏世譜所, 1981, 210쪽. 이훈상·손숙경, 앞의 책, 2009, 42쪽.

18	金儀連	1						
19	方順傑	1			仙			
20	方世成	1			仙			
21	金正連		1			仙		
22	黃富	1	1	1				
23	鄭檜春	1			仙			
24	房用元		1	1				
25	崔希傑	1	1	1				
26	趙億千	1	1	1				
27	黃軒	1	1		仙	仙		금군, 2등훈
28	徐自房	1						
29	徐達云			1				
31	許克連	1	1	1			仙	
32	崔希弼	1			仙			
33	朴訥叱山		1	1				
34	丁克致	1	1		仙			
35	趙國進			1			老	조억천의 叔父
36	崔元夫	1	1	1			仙	
37	黃流元	1			移去金海			수군, 3등훈
38	金兌壽	1	1	1				
39	金永元	1	1					
40	仇世蕃	1			仙			
41	仇茂貞	1			仙			
42	黃秋鶴1	1	1					黃流元의 子
43	金奉明			1				
44	李春福	1	1	1				별시위, 3등훈
45	崔正蘭	1			仙			
46	李德春	1			他			
47	姜億山	1	1		他	他		
48	文彦壽		1	1				
49	仇榮立	1	1		仙	仙		구영취의 弟
50	文奇壽	1						
51	崔達正	1	1	1				
52	許今策1	1						
53	徐彦祐	1	1	1				

54	姜伯	1	1	1			仙	
55	金萬富	1	1		他	他		
56	文彦海	1	1	1				
57	丁義勳			1			仙	정극치의 자
58	黃應祥	1	1	1				
59	許今策 ²		1					
60	趙今龍			1				조억천의 장남
61	黃乙生		1	1				
62	仇得龍		1	1				구세번의 장남
63	孫熙祖			1				조억천의 사위
64	仇義祿		1	1				
65	朴德中			1				
66	黃秋鶴 ²			1				
67	徐信命			1				
계		47	37	35				
公事員		李	徐	?				
洞中		朴, 黃	黃	?				

동래부에는 사상면에서 이 「구동계좌목」을 작성하기 14년 전인 1598년(선조 31)에 향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738년(영조 14)까지 모두 10차에 걸쳐 향안이 개수되었다.¹⁹⁾ 그러나 「구동계좌목」을 비롯한 사상면 동안에 입록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이 향안에 자신의 성명을 올리지는 못했다.²⁰⁾ 사상면의 지역 엘리트들 중 어느 누구도 동래부의 향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구동계좌목」에 입록된 사상면의 지역 엘리트들 중 선무원종공신이 6명이나 있다. 동래부의 주요 향반 가문들이 선무원종공신을 자신들의 현조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²¹⁾ 선무원종공신은 관직 배출자가 없었던 동래부에서 사회적 위상을

19) 이원균, 「朝鮮後期の 東萊郷班에 대하여」, 『港都釜山』 22, 2006, 212~222쪽.

20) 『東萊郷校誌』 己丑年(2009) 增補版, 동래향교, 2010, 409~505쪽.

21)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 『역사학보』 139, 1993, 122~123쪽.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145~198쪽.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였다.

그리고 1612년(광해군 4년)과 1623년(인조 1년)의 좌목 뒷부분에 간략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 “幟布는 射中에서 收合하였고 그 밖의 半丁은 姜億山²²⁾이 또 扶助하여 만들었다”²³⁾는 내용이 있어 동계에서 鄉射禮를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洞中에서 계원들의 喪事에 부조한 내용도 적혀 있어 이 동계가 사천면 지역 엘리트들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천면 구동계 좌목」이 1629년(인조 7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후 45년이나 지난 1674년(현종 15년)에 작성한 동안이 연번 2인 「동중좌목」이다. 이 좌목에 입록된 이들의 수는 모두 86명으로 그 이전이나 이후의 동안에 비해 크게 많다. 이들 중 새로 입록된 梁氏, 安氏, 張氏, 邊氏를 제외한 다수는 임진왜란 직후 동계를 만들었던 이들의 다음 세대들이다.

2. 양립

임진왜란을 겪은 후 처음 결성한 동계 구성원들의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었던 연번 2. 「동중좌목」이 작성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1678년(숙종 4년)에 연번 3. 「사천동안」이 만들어졌다. 이 동계는 동안의 첫 장에 「동래향약중수기」를 수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시책에 따라 동래부사가 주도하여 조직한 것이다. 주민들이 만든 기존의 동계를 없애고 동래부사가 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래부 전체를 관장하는 鄉廳 아래 각 面 단위로 동계를 조직하였다. 이 동계는 1675년(숙종 1

22) 조선후기에 사상지역에 세거해 온 姜氏의 후손들이 현재 사상구 학장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족보에서 姜億山의 성명을 찾을 수 없으며 이들의 족보 기록 중 18세기 후반 이전의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민촌사회의 특징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晉州姜氏淸風公派世譜』上, 寓慕齋, 1992, 460쪽.

23) 一. 幟布則射中收合 其外半丁 姜億山亦爲扶助 造作事.

년)에 국가에서 반포한 『五家作統事目』을 토대로 收稅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²⁴⁾

이 동안에는 裴, 宋, 韓, 劉, 柳, 吳氏 등 여러 다양한 성씨들이 새로 등록 되었으나 구성원의 수는 4년 전에 나온 연번 2. 『동중좌목』보다 적다. 金氏, 李氏 그리고 趙氏가 수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朴氏와 文氏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제까지 동계를 주도해왔던 黃氏의 수는 많이 줄었다.²⁵⁾

그런데 그 다음 시기의 것인 연번 4. 『동안』(1752년, 영조 28년)은 앞 시기의 경향과 달리 황씨의 수가 다시 가장 많아지고 박씨와 문씨의 수가 적어졌으며 구성원의 수도 많이 줄었다. 연번 3. 『사천동안』은 초기 계원의 수가 56명으로 86명이었던 연번 2. 『동중좌목』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연번 4. 『동안』은 더 줄어 2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 뒤를 이은 연번 6. 『대동안』은 31명으로 조금 많아졌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4)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261~304쪽.

25) 김씨와 이씨 및 박씨는 성관을 달리하는 계열이 많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1724년(경종 4년)에 제정된 『향약정절목』에 당시 사천면의 都約長이 金鼎鼎, 副約長이 李命耆, 直月이 朴亭漢이어서 이들 김씨, 이씨가 이 지역사회에서 향반으로 행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성명을 현재 전승하고 있는 동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역대 동안의 기록들 중 양반이 맡는 面 尊位의 지위에 있었던 이들은 朴氏, 文氏, 辛氏, 金氏 등이다. 특히 문씨는 모두 南平을 본으로 하는 이들인데 동래부의 향안과 『東萊鄕校 經任錄』에 가장 많은 수가 등록된 성씨이다. 그리고 박씨는 그 계통을 파악할 수 없으나 죽산 박씨는 남평 문씨 다음으로 향안에 등록된 이가 많고, 월성이나 밀성 박씨 역시 향안과 『東萊鄕校 經任錄』에 다수 등록된 성씨이다. 辛氏, 金氏 역시 그러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향안이나 『東萊鄕校 經任錄』 등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동족들의 지위를 배경으로 지역에서 위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面 尊位의 지위에 있었던 이들은 다음과 같다. 朴靑祐 [연번 6. 『大洞案』 1759년(영조 35) 己卯 四月], 朴泰根 [연번 4. 『동안』 1812년(순조 12년) 壬申 正月로 표기되어 있으나 전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1788년(정조 12년) 戊申 정월의 誤記로 여겨진다], 辛宅淳 [연번 8. 『洞案』 1807년(순조 7년) 정묘 4月], 金興國 [연번 8. 『洞案』 1813년(순조 13년) 계유 10月], 朴起赫 [연번 8. 『洞案』 1814년(순조 14년) 甲戌 4月], 文贊樞 [연번 8. 『洞案』 1820년(순조 20년) 庚辰 10月], 文東曄 [연번 8. 『洞案』 1812년(순조 21년) 辛巳 10月]. 동래의 향반에 대해서는 이원근, 앞의 논문을 볼 것.

만든 앞 시기의 동계들에 비하면 그 수가 많이 준 것이다.

한편 연번 4의 「동안」(1752년, 영조 28년)이 작성된 후 불과 1년 후에 연번 5의 「동중개안」(1753년, 영조 29년)이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 초기 계원이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표 6> 동안에 입록된 성씨 분포

단위 명

연번 洞案名 연도	성씨																계								
	姜	仇	金	文	朴	房	徐	孫	李	鄭	丁	趙	崔	許	黃	梁		安	張	邊	襄	宋	韓	그외 관록 姓氏불능	
1. 구동계좌목 1612년	2	5	5	2	2	2	3	0	4	1	4	1	6	3	7										47
1. 구동계좌목 1623년	2	4	5	2	3	1	1	0	2	0	3	1	3	3	7										37
1. 구동계좌목 1629년	1	3	3	2	2	1	3	1	2	0	3	3	3	2	6										35
소계	5	12	13	6	7	4	7	1	8	1	10	5	12	8	20										119
2. 동중좌목 1674년	4	1	15	2	12	2	2	1	6	1	5	6	2	2	13	1	2	1						7	86
소계	4	1	15	2	12	2	2	1	6	1	5	6	2	2	13	1	2	1						7	86
3. 사친동안 1678년	2	3	6	6	9	1		3	6		2	3	2	2	2	1		1	1	2	2	1	1		56
추록-1717년		1	11	10	3		1	3	3	1	1	6	4		5			1	1	1		1	2		55
소계	2	4	17	16	12	1	1	6	9	1	3	9	6	2	7	1		2	2	3	2	2	3		111
4. 동안 1752년 6월	1		1					2	1	1		4	2		5			1	1	1					20
추록-1787년			8	1	2			7			5	4			5	1			3						36
소계	1		9	1	2			2	8	1		9	6		10	1		1	4	1					56
5. 동중개안 1753년 6월			3					1	3	1	1	3	1												13
추록-1762년			1	3	1	1	2	2	2	2		1	3	2		4			3	2					29
소계			1	6	1	1	2	2	3	5	1	2	6	3		4			3	2					42
6. 대동안 1759년 4월	1		4		1	1		2	1	1		7	2		5	1			1	3			2		32
추록-1790년	1		19	1	12	1	2	1	22	12		15	8	1	12				2	4	2	3			118
소계	2	0	23	1	13	2	2	3	23	13	0	22	10	1	17	1	0	0	3	7	2	0	5	0	150
7. 구동중계안 1778년 3월			5	1		2		1	2	1	1	7	3		3				3	3					32
추록-1780년			3			1		1	1			1			1										6
소계			8	1		2		1	1	3	1	8	3		3				3	3					38
8. 동안 1804년	6	5	54	18	33	7	4	12	41	11	4	34	31	4	34	2	4	3	8	19	3	3	13		353
추록-1821년	2	1	24	4	19	2	3		10	3	1	2	6	2	9	3	1	1	2	2			5		102
소계	8	6	78	22	52	9	7	12	51	14	5	36	37	6	43	5	5	4	10	21	3	3	18		455
9. 연구계신좌목 1810년 8월	1	6	1	3	1			3	2	1	5	5		4				1	3	1					37

추록-1835년	2	1	10	11	1	5	10	3	1	7	9	1	4			2	3	2	2	74			
소계	2	2	16	1	14	2	5	13	5	2	12	14	1	8		3	6	3	2	111			
10. 대동신안 1892년 5월	1	1	8	11		2	2	8	2	3	9	4		6	2		8	1	5	73			
추록-1908년	3	4	37	6	17	7	3	2	29	7	4	21	14		24	4	11	9	8	1	21	232	
소계	4	5	45	17	17	9	5	2	37	9	7	30	18		30	6	0	11	17	9	1	26	305
11. 연구계중수좌안 1922년 4월	3	1	43	3	25	3	3		15	3	2	10	17		14	1	5	8	5	1	23	185	
추록-1943년	4	1	16	3	7				8	1	1	6	5		5		2	2	2	1	8	72	
소계	7	2	59	6	32	3	3		23	4	3	16	22		19	1	7	0	10	7	2	31	257

※ ‘그외 姓氏’에 해당하는 姓氏들: 3. 사천동안(劉, 柳, 吳), 6. 대동안(辛, 河), 8. 동안(劉, 柳, 吳, 辛, 河, 郭, 申, 吳, 尹, 皇甫, 白, 尹), 9. 연구계신좌목(白, 洪), 10. 대동신안(吳, 辛, 尹, 白, 洪, 全, 池, 千, 玉, 秋, 王)

※ “8. 동안”과 “11 연구계중수좌안”은 역대 회원의 성명을 모두 기록해 놓아 초기 계원 수를 알 수 없음.

이 연번 5의 동계는 자신들의 조직을 “舊洞契”라 자칭하고 있다. 이는 관 주도 동계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야말로 과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연번 1과 2 동계의 뒤를 잇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미로 읽힌다. 이 연번 5인 『동중개안』에는 1760년(영조 36년)에 작성한 절목이 수록되어 있는데²⁶⁾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연번 7의 『구동중개안』(1778년, 정조 2년)의 절목에 들어 있다. 이는 이 연번 7의 동안이 앞의 연번 4, 6, 8과 병존하면서 연번 5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26) 庚辰 三月 十一日 改節日, 『洞中改案』

- 一. 婚喪間錢文二兩及白米二十斗扶助上下是乎 完文則當時上下爲遺 米則自九月至十二月上下定式爲臥乎事
- 一. 齊給米奉上時 餅米一斗進呈事
- 一. 齊給米錢持上時 全干不納之員 則削名事
- 一. 錢米持上時 尊位與兩所任 持上傳給事

27) ‘戊戌 3月 日 舊洞中改案 節日’, 『舊洞中改案』,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白珪成 編), 낙동문화원, 2000, 52쪽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一. 婚喪間에 錢文 두냥(2兩)과 白米 20斗로 표준하여 上下(以上이나 以下)로 扶助 할 것이며, 또는 時勢에 相當하게 하고, 쌀은 9월부터 설날까지 規式을 정할 것.
- 一. 齊給米를 바칠 때, 떡쌀(餅米) 1말도 올릴 것.
- 一. 齊給米를 錢文으로 올릴 때에 前연 納付하지 않는 契員은 이름을 삭제할 것.
- 一. 서로 공경할 도리인데도 공손하지 못한 말씨 쓰는 契員은 이름을 삭제할 것.

이 절목들에는 婚喪事의 상호부조와 계원의 경제적 의무 외에 이들의 특권이나 문지의 차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향약 계열의 동계인 연번 4, 6, 8의 동안들은 계원들의 특권을 다음과 같이 뚜렷이 명시하여 강조 하고 있다. 먼저 연번 4. 『동안』의 절목 (1752년, 영조 28년 7월)에

이 대동계의 좌목은 나라와 도 및 각 읍면에서 풍속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다. 좌목에 오른 이들은 나머지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바가 있으니 무릇 여러 요역을 감면해주는 것에 관해서는 면 내부에서 역을 행하는 과정에서 좌목 중 개개인이 나와서 사역하는 것이어서 거론하지 않았다.²⁸⁾

고 하여 요역의 일부를 면제받는 계원의 특권을 잠시 언급하더니 이 동안의 뒤를 이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번 6. 『대동안』의 절목(1788년, 정조 12년 7월)에서는

-
- 一. 終日 稷會할 때 座中에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은 輕重을 조사하여 이름을 삭제할 것.
 - 一. 계 모임을 할 때 緣故(理由)없이 불참하는 계원은 3개월 간 벌에 처할 것.
洞中 所任 黃建伯 邊有謙
 - 一. 婚喪間錢文二兩及白米二十斗扶助上下是乎 完文則當時上下爲遺 米則自九月至十二月上下定式爲臥乎事
 - 一. 齊給米奉上市 餅米一斗進呈事
 - 一. 齊給米錢持上市 全干不納之員 則削名事
 - 一. 相敬之道 不恭言端之員 則以爲削名爲齊
 - 一. 終日聚會時 座中紛云之員 則以查輕重 以爲削名事
 - 一. 聚會時 無緣不參之員 則三朔付罰爲以事
洞中 所任 黃建伯 邊有謙

28) 節目, '壬申 七月初三日 改座目', 『洞案』, 白珥成 編, 앞의 책, 33쪽.

右大洞座目者 國道邑各面治風正俗之所也 座目者 與他民有異 凡諸徭役存減者 面內行役中座目元當身身出使勿爲舉論 …

1. 洞案에 입록된 契員은 그 나머지 백성과는 구별되니 官烟役 이외는 面中에서 거행하는 절차에서 한 되(斗)를 감하여 줄 것. …
1. 洞案에 입록된 契員 외에 그 나머지 백성이 함부로 一人用 가마를 타는 자는 관청에 알려 죄를 칭하고, 만약 贖錢을 하려면 20兩을 바쳐야 죄를 감해줄 것. …
1. 洞員 자손 중에 만약 조그마한 일로 面內의 賤役을 할 범죄라면 免하여 줄 것.²⁹⁾

등 계원의 특권을 부역뿐 아니라 풍속과 형벌에서의 특권에 이르기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계원의 자격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연번 4. 「동안」의 절목(1752년, 영조 28년 7월)에서는

명단을 고친 뒤에 혹시 새로 참여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 자제는 禮錢을 3냥, 선생 자제가 아닌 자로서 새로 이사 온 이는 예전 5兩으로 규약을 정하며, 要緊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론하지 말 것.³⁰⁾

등으로 명시하더니 연번 6. 「대동안」의 절목(1788년, 정조 12년 9월)에서는

1. 선생 자제 중에서 洞中에 참여하려는 이가 있으면 양반 자제는 禮錢 1兩, 중인 자제는 예전 1兩 5錢을 바칠 것.
1. 선생 자제가 아닌 자로서 새로 이사와 참여하려는 이는 양반은 禮

29) ‘節目’, 『大洞案』, 白珥成 編, 앞의 책, 34쪽.

一. 洞案各員與凡殘自別 官烟役外 自面中奉行等節 一斗減給事
 一. 洞案外凡殘監乘獨轎者報官定罪 而如惑收贖則錢文貳拾兩持之減罪事
 一. 洞員子孫中 若有紛徵糾於面內賤役 則頗給事

30) 節目, ‘壬申 七月初三日 改座目’, 『洞案』, 白珥成 編, 위의 책, 33쪽.

如此改案之後 或有新參之人則 先生子枝禮錢參兩 非先生子枝元新來則 禮錢五兩式 定憲爲乎矣 不緊之人則 切勿舉論

錢4兩, 중인은 예전 5兩씩 바칠 것.³¹⁾

으로 더욱 자세하게 차등을 두어 같은 선생 자제라고 하더라도 門地에 따라 양반과 중인을 구별하고 常民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對象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있다.³²⁾ 이어 그 뒤에 수록된 「追節目」(1790년)에서는

洞中에서 前後로 洞案에 참여한 수가 백여 명이나 되어 실로 남발되어 엄숙함이 없으니 형세가 본디 그렇게 된 것일지라도 지금부터는 혹시 동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각별히 그 사람됨과 문벌을 가려 택한 후에 錄名을 허락할 것이다. 선생 자제는 예전을 2냥을 바치고, 선생 자제가 아니면 예전 7량을 바치도록 정하여 이를 영구히 준행토록 한다.³³⁾

고 명시하여 동계 참여를 위한 禮錢의 액수를 기존 계원의 자제는 양반 1량, 중인 1량 5전에서 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2전으로, 기존 계원의 자제가 아닌 자는 양반 4량, 중인 5량에서 역시 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7량으로 높이는 대신 양반과 중인의 門地에 따른 차이는 없애고 있어 계원의 특권을 강조하는 경향 속에서도 중인 계층의 발언권이 높아

31) ‘節目’, 『大洞案』, 白珥成 編, 앞의 책, 34쪽.

一. 先生子枝中 或有入參洞案 則兩班子枝則禮錢一兩 中人子枝則禮錢一兩五錢 持上事

一. 非先生子枝 新來入參者 兩班則禮錢肆兩 中人則禮錢五兩式 奉上事

32) 물론 여기서 사용한 중인이란 용어는 중앙의 雜職 기관이나 지방의 吏胥 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과 상민 계층 사이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지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追節目’, 『大洞案』, 白珥成 編, 위의 책, 34쪽.

洞中前後參案數至百員 實爲濫數無嚴 勢所固然 自今以後 或有願入參案者是良置各別擇其爲人之及門闕然後 可以許錄是乎矣 先生子枝則禮錢貳兩奉上是遣 非先生子枝則禮錢柒兩奉上 次爲定爲去乎 以此永久遵行事

지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3. 통합

관이 주도하는 향약 계열의 동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이 스스로 동계를 따로 만들어 이와 양립하였던 배경을 1810년(순조 10년)에 작성된 연번 9. 『戀舊契新座目』의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무릇 이 契는 우리 先祖들을 위해 다시 만든 것이다. 아아, 우리 선조들이 宣祖 연간에 이 계를 만든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개혁하는 것이니,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위하고 민폐를 없앤 것이니,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다.

옛날 임진왜란 직후에 거주민이 적어 國役に 응할 길도 없었다. 그리고 사또가 도입할 때 밀양 삼랑진에서 우리 면 모라리로 와 읍내로 들어가니 舊官 사또 역시 그렇게 하였다. 그 맞이하고 보낼 때 경비가 아주 많이 들었는데 契中에서 前例대로 물자를 내어 행사를 모두 맡아 거행하였다.

그 후 100여 년 만에 新舊 사또를 맞이하고 보내는 일이 北面으로 돌아갔으니, 과거 送迎할 때 사용한 가마솔과 늦그릇 등을 팔아서 利息을 받아 토지를 사고 재물을 만들어 모두 백성들의 요역에 사용하였으니 주민들이 이를 舊洞契物이라 하였다.

年전에 북면 居民들이 作廳의 아전과 面尊位에게 疏狀을 올렸는데, 사또께서 그 題音에서 “數百年 동안 쌓아온 재물을 갑자기 변통하여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다 옛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 민폐를 없애고자 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 舊洞의 남은 재물 18斗地 畝를 面中에 맡겨 백성들의 고통을 막는 재물로 쓴다면, 이 어찌 祖先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 舊洞의 남은 재물은 新面に 맡기게 되었으나. 200년간

흘러 온 名簿와 文籍은 갈 곳이 없어 우리 代에 와서 버려져 없어질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契를 만들어 戀舊契라 이름 하니 조상들이 남긴 뜻을 한결같이 따라서 후손들이 성심을 모아 각자 힘쓰고 힘쓴다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³⁴⁾

연구계의 창립 배경을 설명하는 이 서문의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연번 4, 6, 8의 동안들은 향약청에서 실시한 동계의 것이었던데 비해 연번 5, 7, 9의 동안들은 면에 맡겨진 잡역을 부담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동계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천면은 밀양과 삼량진으로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新舊 사또를 맞이하고 보내는데 필요한 경비로 면민들이 부담해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계의 동안이 연번 5와 7이었다. 그런데 신규 사또가 지나가는 길이 달라져 이 부담이 없어지자 그 동안 경비 마련을 위해 비축했던 논 18두락을 新面 즉 사천면이 上端과 下壇 두 개의 면으로 분할되어 새로 생겨난 사상면과 사하면에 넘겼다는데 이는 곧 그 재원을 사상면과 사하면의 것으로 半分하였다는 뜻이라고 여겨진다. 사상면에서는 이렇게 반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그 뒤를 잇는 계를 새로 창립하였는데 이 계의 문서책이 연번 9. 「연구계신좌목」인 것이다.³⁵⁾

34) ‘庚午 八月 日 戀舊契新設座目序’, 『戀舊契新座目』, 白珥成 編, 앞의 책, 52~53쪽.
蓋斯契也 爲祖先而復設也 唯我祖先 在萬曆年間設施爲契者 至于二百餘年 今始改革 而其間之事 皆爲公盡誠 爲民救弊 則非所以尋等例視也 昔在壬辰兵亂之後 居民鮮少 無路從役 而且官使到任時 自密陽三浪 到本面毛羅里 因到于邑 舊官亦然 其於迎送之際 不費頗多 自契中 拔例出物 專當舉行矣 其後百餘年之後 新舊使逢迎之事 歸于北面 則前日迎送時所用釜鼎鑪器等物 斥賣取息 買土作物 當用於民間徭役 居民名曰 舊洞云矣 年前因北面居民呈狀鄉作廳稟記及面尊位稟記 題音內數百年年久之物 卒難通變置之事 教是矣 此皆古人爲民救弊之本意也 以此舊洞餘物十八斗地沓屬之面中 使爲民瘼之物 則豈非成遂祖先之本意乎 然而舊洞餘物從新面得其名 而其於二百年流來之名簿及文蹟 無歸處 至於等棄泯滅之境 豈不慨然哉 今又復設一契 名爲戀舊契 而一遵祖先之遺意 以遂後孫之誠心 各其勉之勉之 幸甚幸甚

35) “新面”이란 단어를 연구자는 “사천면이 둘로 분할되어 생겨난 사상면과 사하면”이라고 해석하였다.

당시 연구계를 창립할 때 始初資産은 논 18두락의 절반인 7마지기 5도지기였는데 이를 모든 계원들에게 고루 이식하여 그 수익을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계의 운영비로 충당하였다.³⁶⁾ 그리고 이 계의 재원은 계 운영비 뿐 아니라 면의 각종 재정 부담도 떠맡아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1863년(철종 14년)에 작성된 연번 14. 『戀舊契新節目』에서 엿볼 수 있다.

… 契物로는 錢 15냥 9전 7푼과 畝 23斗落 8刀地, 利錢 6냥 3전 9푼, 賻賣錢 19냥뿐이다. 이것으로 각종 경비를 충당한다면 부족하여 한탄할 터인데 …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 논을 팔아서 마련한 212냥을 네 개의 洞에 나누어 이식을 기르면 될 것이다. … 읍면의 경비는 限定이 있어 이식한 돈에서 오히려 나머지가 있을 터이니, 이 어찌 좋은 계책이 아니겠는가? 매년 10월 20일에 元金과 利子를 함께 수납함이 옳다. 만약 기간을 늦추어 납부하지 않는 洞은 마땅히 따로 죄를 논의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고 경계하지 않겠는가! … 37)

이에 따르면 1863년(철종 14년) 당시 총자산은 錢 15냥 9전 7푼과 畝

36) ‘完議’, 『戀舊契新節目』, 白珥成 編, 앞의 책, 53쪽의 내용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一. 契의 소유로 이미 7마지기 5도지기의 논이 있으니, 해마다 賭地稅로 곡식을 받아 팔아 쓴다면 1년 두 차례 계모임 때 그 경비가 매우 많아 남은 저축이 없게 된다. 계원 이름으로 돈 1냥씩 받지 말고 매 6개월 마다 이자를 받아 契物로 할 것. …

… 一. 契中既有七斗五刀之畝 而逐年賭地發賣而需用 則一年兩次之聚會 其費許多無餘儲 以莫爲契員名出錢一兩 每六朔收邊利 以爲契物爲齊 …

여기에 나오는 契의 소유 논 7마지기 5도지기는 연번 5, 7의 동계에서 비축하였던 재원인 논 18두락의 절반이므로 사상면과 사하면이 그 자산을 각기 半分하였다고 여겨진다.

37) ‘同治二年癸亥十一月日戀舊契新節目’, 『戀舊契新節目』, 白珥成 編, 위의 책, 54쪽.

… 契物只是錢拾伍兩玖錢柒分 畝二十三斗八刀地只 而利錢陸兩參錢玖分 賻賣錢拾玖兩也 以此爲各樣經費 ○恨不足 … 因從衆議 以賣畝錢貳百拾貳兩 分殖於四洞 … 邑面經用自有定限 而用錢利殖 ○有贏餘 是其非良策耶 以每年十月二十日 俱元利代點是矣 如年愆期不點之洞 則當有別般論罪之事 無可不戒懼哉 …

23두락 8도지, 利錢 6냥 3전 9푼, 賻賣錢 19냥이었다고 하니 1810년(순조 10년) 창립 당시에는 겨우 논 7마지기 5도지기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논 16마지기 3도지기와 錢 15냥 9전 7푼, 利錢 6냥 3전 9푼, 賻賣錢 19냥이 붙어났다. 이 중 논 16마지기 3도지기를 모두 팔아 212냥을 마련하고 이를 각 동에 고루 나누어 이식해 면의 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재원이 늘어나자 그 운영을 둘러싸고 계원들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 마침내 1872년(고종 9년)에 당시 총자산 309량을 ‘新大同’에 넘기고 이 조직과 병합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로서 1753년(영조 29년)에 연번 5. 『동중개안』이 작성된 이후 양립하며 병존했던 두 조직이 1872년(고종 9년)에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던 것이다.³⁸⁾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 시기의 동안이 현재 전승되지 않는다. 다만 이 조직을 계승한 조직의 동안이 1892년(고종 29년)에 처음 작성된 연번 10의 『대

38) ‘壬申十月日’, 『戀舊契新節目』, 白珉成編, 앞의 책, 56~57쪽.

위는 新年節目을 논의한 것이다. 우리 舊洞中에 근래 人心이 古朴하지 못하고 각종의 下記한 일이 많고 요긴하지 않은 名色이 많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이런 분쟁의 폐단이 일어났으므로 지금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의가 준열하게 일어났으니, 바로잡을 방법은 달리 좋은 계책이 없고 新大洞에 합쳐 붙여버리는 것이 매우 事理體制에 합당한 것이며, 남은 재물은 309냥이다.

新大洞에 남긴 재물로 말하면, 모두 13년 利殖 취한 것으로 백성의 고통스런 일에 보조하는 것이라, 별도로 旬管 1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며 1주년마다 바꾸기로 하며, 所(任)은 부지런하고 실한 사람을 초하루 모임 자리에서 擇定하여 이를 준행할 것이요, 洞案에 入錄하는 것은 先生의 子弟만 허락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비록 동안에 入錄하기를 원하더라도 결코 나이를 우선시 하지는 말라. 다음과 같이 積물을 만드니 옛버릇을 한결같이 씻어버리고 영구히 준행토록 할 것.

右爲新年節目完議事 惟我舊洞中 輒近人心不古 各樣下記夥然 ○多有不緊名色 由是致此紛亂之弊故 今於會席 公議竣發 歸正之方 他無長策 是在合付於新大洞 甚合事體是如 遺物則爲三石九兩零 而以新大洞遺物 言之 並爲十三取殖 補用於民瘼是矣 別置旬管一員 使之看檢 每一周年改遞爲乎 所(任)以勤幹人 擇定于朔會之席 依此遵行是遺 洞案載錄 只以先生子枝許參 而新入人雖有願參 切勿齒列之意 如是節目爲去乎 一洗舊習 永久遵行者 … * 원문과 번역문 중의 ‘(任)’은 脫字라고 생각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넣어 새로 번역하였음.

동신안』이라고 여겨진다.

이 「대동신안」의 초기 계원 수는 앞에서 제시한 <표 6>에서 보듯이 73명이다. 성격이 상이한 두 동계의 계원수를 합친 것을 고려하면 그 수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1908년(순종 2년)까지 이어지는 추록계원의 수가 232명으로 1년에 평균 14.5명이 추록되었다. 연번 8. 「동안」의 추록계원수가 102명으로 연평균 6명이었던데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全氏, 池氏, 千氏, 玉氏, 秋氏, 王氏 등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姓氏들이 계원으로 참여하는 개방성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동안의 말미에는 1895년(고종 32년)에 새로 정한 다음과 같은 완의문이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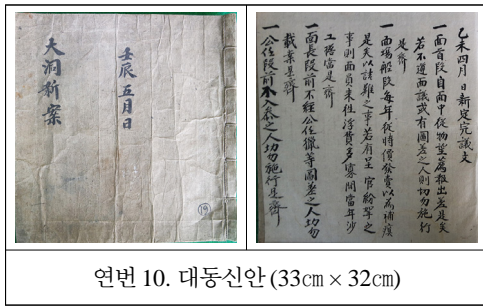
1. 面長은 面中의 物望에 따라 추천하여 뽑을 것이며, 만약 面中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뽑히기를 도모하는 자가 혹시라도 있으면 결코 추천하지 말 것.
1. 面의 市場에 드나드는 배의 물자는 매년 時價에 따라 사들여서 손실을 보충할 것이며, 트집을 잡아 시비를 따지는 문제로 관에 소송을 제기해 紛亂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面民들이 내왕하는 배삯이 많고 적고 간에 그해 沙工 일을 맡게 할 것.
1. 面長의 職에는 이전에 公務를 맡아본 적이 없거나 차례를 뛰어넘어 뽑히기를 도모하는 자는 결코 추천안에 올리지 말 것.
1. 公任의 職에 이전에 公的인 일에 빠진 적이 있는 이는 결코 뽑지 말 것.³⁹⁾

39) ‘乙未 四月 日 新定完議文’, 『大同新案』, 白珥成 編, 앞의 책, 34쪽.

- 一. 面長段自洞中從物望薦報出差是矣 若不遵面議或有圖差之人 則切勿施行是齊
- 一. 面場船段每年從時價發賣 以爲保瘼是矣 以詰難之事 若有呈官紛拏之事 則面民來往浮費多寡間 當年沙工擔當是齊
- 一. 面長段前不經公任躐等圖差之人切勿載案是齊
- 一. 公任段前不入參之人切勿施行是齊.

면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추천 자격과 시장 질서에 관한 문제만을 언급할 뿐 이전 향약 계열의 동계에서 보이던 특권 의식이나 문지에 따른 綱常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동안의 외형과 지질 역시 그 이전 향약 계열의 동안과는 완전히 다르며 앞장 <그림 2>의 연번 5, 7, 9 등과 같이 민이 스스로 만든 동계의 동안 계열에 속한다.

<그림 3> 「대동신안」의 사진



이러한 성격을 지닌 병합된 동계의 위상과 역할을 1872년(고종 9년)과 1873년(고종 10년)에 각기 작성된 두 절목에서 엿볼 수 있다.

1872년(壬申) 10월 일

1. 문서로 契帖을 이를 때는 新大同 有司가 각종 문서를 가져와 面首에게 참고 열람하게 할 것.
1. 문서 검열 때는 兩次에 각각 두 냥씩 마련할 것.
1. 契首의 정월 歲費는 1냥 3전, 추석비용은 1냥을 마련하고 面首나 계수 똑 같은 양으로 시행할 것.
1. 句管은 정월 歲費로 1냥, 추석비용은 7전으로 정함.
1. 정월세비는 신대동 유사가 거행함.
1. 面首가 때때로 契首를 겸하면 정월세비와 추석비용을 加俸하지 않

음.

1. 미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임.⁴⁰⁾

1873년(癸酉) 4월 일 追節目

1. 面首 자신의 喪에 대한 賻儀錢은 2냥씩 마련함.
1. 契長 자신의 喪에 대한 賻儀錢은 2냥씩 마련함.
1. 句管 자신의 喪에 대한 賻儀錢은 1냥3전씩 마련함.
1. 契員 자신의 喪에 대한 賻儀錢은 5전씩 마련함.
1. 미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임.⁴¹⁾

먼저 동계의 운영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자 할 때는 有司가 이를 面首에게 가져가 참고로 열람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동계 운영의 상황을 면수에게 참고로 보여주기만 할 뿐 지휘와 감독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며 동수에 대한 동계의 상대적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歲費와 賻儀錢을 面首와 契首(長) 및 句管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동계가 面의 재정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 지급액수에서 面首와 契首(契長)가

40) ‘壬申 十月 日’, 『戀舊契新節目』, 白珥成 編, 앞의 책, 57쪽.

- 一. 文書成帖時 新大同有司持各樣文書考覽于面首爲定是齊
- 一. 文書考覽時 兩次各以二兩式磨鍊是齊
- 一. 契首正需則一兩三錢 節需則一兩磨鍊是矣 面首與契首一體施行是齊
- 一. 句管正需則一兩 節需則七錢爲定
- 一. 正節需 新大同有司擔當舉行是齊
- 一. 面首有時兼契首則 正節需再不加封是齊
- 一. 未盡條件追後磨鍊是齊

41) ‘癸酉 四月 日 追節目’, 『戀舊契新節目』, 白珥成 編, 위의 책, 57쪽.

- 一. 面首身喪賻儀錢貳兩式磨鍊是齊
- 一. 契長身喪賻儀錢貳兩式磨鍊是齊
- 一. 句管身喪賻儀錢壹兩參錢式磨鍊是齊
- 一. 契員身喪賻儀錢伍錢式磨鍊是齊
- 一. 未盡條件追後磨鍊是齊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위상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동계가 비록 面首의 관할 하에 있지만 상대적 독자성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독자성은 면수의 급여와 각종 경비를 이 동계가 부담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IV. 맺음말

조선후기 이후 작성된 동래부 사천면(사상면)의 洞案(실체는 面案임)들이 현재 무려 11종 이상이나 전승되고 있다. 이 동안들의 작성 시기를 모두 추정해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드러난다. 하나의 동안이 작성되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지속되기 마련인데 이 동안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동안이 작성되어 이어져 가는 도중에 새로운 동안이 작성되어 이와 병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동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이 수차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별다른 역동성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이 변방의 민촌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임진왜란 직후인 1612년(광해군 4년)에 중간 계층의 선무원종공신들을 비롯한 지역 엘리트들이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해 面 단위의 동계를 결성하여 그 조직이 이어져 왔는데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1678년(숙종 4년) 동래부사가 주도하는 향약 체계로 개편되면서 <표 2>의 연번 3. 「사천동안」이 작성된 후 연번 4. 「동안」으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1753년 「舊洞契」라 자칭하는 또 하나의 동계가 결성되어 향약 체계에 따른 동계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임진왜란 직후에 지역 엘리트들이 스스로 만든 동계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고 내세운 것이다. 이후 이들은 연번 5, 7, 9의 동안들을 작성해 온 반면 향약 체계에 따른 동계 역시

지속되어 연번 4, 6, 8의 동안들을 남겼다.

상이한 두 동계의 양립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新舊 사또의 迎送 행사 비용을 사천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계를 조직하여 경비를 부담하였는데 이 조직의 것이 연번 5, 7, 9의 동안인 것이다. 이 계열 동안의 절목에는 계원들의 상호부조와 경제적 의무 외에는 여타의 특권 의식이나 門地의 차별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연번 4, 6, 8. 등 향약 계열 동안의 절목에는 계원의 특권과 강상 의식을 점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新參者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의무 중 양반과 중인 계층의 차이를 없애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이는 이 지역의 특성상 계원의 대다수가 양반과 일반 상민 사이에 위치한 중인 계층에 속하여 이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다 19세기 초에 신구 사또가 지나가는 길이 바뀌면서 신구 사또의 영송 행사 부담이 없어져 이를 위해 비축했던 재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연번 7. 「구동중개안」의 계원들은 그 재원을 新面 즉 사천면 이 上·下端 두 개의 면으로 분할되어 새로 생겨난 사상면과 사하면에 각기 균등하게 반분하여 넘겼다.

사상면에서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그 뒤를 잇는 동계를 1810년(순조 10년)에 새로 창립하였는데 이 조직의 동안이 연번 9. 「연구계신좌목」이다. 이 동계는 자신들의 재원을 계원들에게 고루 이식하여 그 수익을 계의 운영비로 충당할 뿐 아니라 면의 각종 재정 부담도 떠맡아 해결하였다. 그러다 비축한 재원이 많아지자 이의 운영을 둘러싸고 계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마침내 1872년(고종 9년)에 동계의 모든 자산을 ‘新大同’이란 향약 계열의 조직에 넘기고 이와 병합하였다.

이 ‘신대동’이란 동계를 계승한 조직의 동안이 연번 10. 「대동신안」

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조직은 다수의 새로운 성씨들을 영입하는 등 좀 더 개방적인 성격을 띠었고, 특권이나 강상 의식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동안의 외형조차도 향약 계열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동계의 문서를 面首에게 보여주되 다만 참고 열람하게 하였다는데 이는 동계가 비록 면수의 관할 하에 있지만 상대적 독자성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자성은 면수의 歲費 및 면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이 동계가 부담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사천면(사상면) 동계의 양립과 통합의 역사를 단순히 향약 계열 동계와 면의 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계의 관계로만 설명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이 지역 엘리트들의 성격과 국가 권력 및 읍치 주도 세력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지역 엘리트들 상호간의 갈등과 타협 등의 복합적인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 주변부 지역 사회의 이러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世居姓氏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의 축적이 요구되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접근을 위한 예비적 검토라고 할 수 있다.

〈 부록 〉

<표 7> A시기 각 동안의 임원 비교

연도	왕력	간지	월	(연번) 洞案名	契名	유사	공(사)원	소임	비고
1752	영조28	임신	6	(4) 동안	大洞中	黃進億	孫鉉	.	
1752	영조28	임신	7	(4) 동안	
1752	영조28	임신	9	(4) 동안	大洞中	黃(착명)	孫(착명)	.	
1753	영조29	계유	3	(4) 동안	大洞中	趙世亮	崔俊華	.	
1753	영조29	계유	6	(4) 동안	大洞中	趙(착명)	崔(착명)	.	
1753	영조29	계유	6	(5) 동중개안	旧洞中	李成札	金汝俊	.	
1753	영조29	계유	8	(4) 동안	大洞中	趙(착명)	崔(착명)	.	
1754	영조30	갑술	4	(5) 동중개안	旧洞中	趙連弘	趙碩敏	.	
1754	영조30	갑술	10	(4) 동안	大洞中	.	.	黃(착명)	
1754	영조30	갑술	3	(4) 동안	大洞中	.	.	襄(착명)	

<표 8> B시기 각 동안의 임원 비교

연도	왕력	간지	월	(연번) 동안명	계명	유사	공(사)원	소임	비고
1759	영조35	기묘	4	(6) 대동안	大洞中	黃河淨	孫顯	.	
1759	영조35	기묘	9	(5) 동중개안	洞中	黃淨泰	崔永恒	.	
1760	영조36	경진	3	(6) 대동안	大洞中	黃(착명)	孫(착명)	.	
1760	영조36	경진	4	(6) 대동안	大洞中	黃河淨	孫顯	.	
1760	영조36	경진	9	(6) 대동안	大洞中	黃河淨	孫顯	.	

<표 9> C시기 각 동안의 임원 비교

연도	왕력	간지	월	(연번) 동안명	계명	유사	공(사)원	소임	비고
1776	영조52	병신	3	(6) 대동안	大洞中	黃(착명)	鄭(착명)	.	
1777	정조1	정유	1	(6) 대동안	大洞中	黃(착명)	鄭(착명)	.	
1778	정조2	무술	1	(6) 대동안	大洞中	金(착명)	黃(착명)	.	
1778	정조2	무술	3	(7) 구동중개안	

1778	정조2	무술	6	(6) 대동안	大洞中	.	.	金繼連 黃淨泰	
1778	정조2	무술	윤6	(6) 대동안	大洞中	.	.	金繼連 黃淨泰	
1778	정조2	무술	7	(7) 구동중개안	洞中	.	.	崔貴男 裊順才	
1778	정조2	무술	12	(7) 구동중개안	洞中	.	.	趙進泰 趙益泰	
1779	정조3	기해	7	(6) 대동안	大洞中	.	.	趙震泰 崔永恒	
1779	정조3	기해	12	(6) 대동안	大洞中	趙(착명)	黃(착명)		
1780	정조4	경자	6	(7) 구동중개안	洞中	.	.	李成昌 裊應度	
1780	정조4	경자	11	(7) 구동중개안	洞中	.	.	李成昌 裊應度	
1781	정조5	신축	7	(6) 대동안	大洞中	趙(착명)	黃(착명)	.	

<표 10> E시기 각 동안의 임원 비교

연도	왕력	간지	월	(연번) 동안명	계명	유사	공(사)원	소임	비고
1810	순조10	경오	4	(8) 동안	.	.	.	金振聲	
1810	순조10	경오	8	(9) 연구계신좌목	
1811	순조11	신미	10	(8) 동안	.	.	趙(착명)	趙重老	
1811	순조11	신미	11	(9) 연구계신좌목	.	.	.	崔正崑	
1812	순조12	임신	1	(4) 동안	.	金(착명)	黃(착명)	.	誤記 ⁴²⁾
1812	순조12	임신	5	(9) 연구계신좌목	.	.	.	崔正崑	
1813	순조13	계유	4	(8) 동안	.	.	鄭載賢		
1813	순조13	계유	9	(9) 연구계신좌목	.	.	.	裊連壽	
1813	순조13	계유	10	(8) 동안	.	.	鄭(착명)		
1814	순조14	갑술	3	(9) 연구계신좌목	.	.	.	裊連壽	
1814	순조14	갑술	4	(8) 동안	.	.	鄭載賢	.	
1814	순조14	갑술	10	(8) 동안	

42) 연번 4. 동안의 1812년(순조 12) 임신 1월의 기록은 1788년(정조 12) 무신 1월의 誤記로 여겨진다.

<표 11> F시기 각 동안의 임원 비교

연도	왕력	간지	월	동안명	계명	유사	공(사)원	소임	비고
1818	순조18	무인	5	(8) 동안	·	·	裒德亮		
1818	순조18	무인	6	(9) 연구계신좌목	·	·	·	趙正太	
1818	순조18	무인	8	(9) 연구계신좌목	·	·	·	趙成太	
1818	순조18	무인	10	(8) 동안	·	·	裒德亮		
1819	순조19	기묘	4	(8) 동안	·	·	姜昌悅		
1819	순조19	기묘	10	(8) 동안	·	·	姜(착명)		
1820	순조20	경진	3	(9) 연구계신좌목	·	·	·	黃興老	○
1820	순조20	경진	10	(8) 동안	大洞中	裒國淳	黃興老	·	○
1821	순조21	신사	8	(9) 연구계신좌목	·	·	·	·	
1821	순조21	신사	4	(8) 동안	大洞中	裒國淳	黃興老	·	
1821	순조21	신사	3	(9) 연구계신좌목	·	·	·	·	
1821	순조21	신사	10	(8) 동안	大洞中	金得瑞	文繼商		
1822	순조22	임오	10	(9) 연구계신좌목	·	·	·	·	
1824	순조24	갑신	8	(9) 연구계신좌목	·	房(착명)	文(착명)	·	

| 참고문헌 |

1. 자료

『舊洞中改案』, 『大洞新案』, 『大洞案』, 『東萊 沙川 先生案』, 『洞案』, 『洞中改案』, 『洞中座目』, 『戀舊契新節目』, 『戀舊契 新座目』, 『戀舊契 重修 座案』, 『沙川洞案』, 『沙川面 舊洞契 座目』, 『沙上面 新定完議 節目』, 『沙川 鄉約廳 節目』

『慶州崔氏觀稼亭公派周禮崔氏系譜』, 慶州崔氏觀稼亭公派周禮崔氏門族會, 1988.

『南平文氏世譜』, 1950.

『南平文氏大同繼承譜』, 南平文氏親睦會, 1961.

『東萊史料』1·2·3, 驪江出版社, 1989.

『東萊鄉校誌』, 東萊鄉校, 2010.

『密城朴氏司直公派世譜』, 密城朴氏司直公派宗親會, 1993.

『昌原具氏世譜』, 昌原具氏世譜所, 1981.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咸安 趙氏 東隱公派宗門會, 2008.

백이성,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洛東文化院, 2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沙上區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2005.

부산광역시 사상구, 『沙上區誌』,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5.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총담』, 동아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9.

진상원·이훈상, 『조선후기 동래 사상면 함안 조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5.

창원구씨 동래문중, 『昌原具氏 東萊門中誌』, 창원구씨 동래문중, 2012.

해운대구청, 『해운대의 옛모습이 담긴 東下面 古文書 : 譯註景衍』, 해운대구청, 1994.

2. 저서 및 논문

가. 무임 및 동래 지역 관계

姜大敏, 『東萊府 南村面 古文書 解題』, 『港都釜山』 11, 1994.

- 閔善姬, 『朝鮮後期 東萊의 鄉班社會와 武廳 : 朝鮮後期 鄉班社會의 支配構造와 社會移動問題에 대한 一試論』, 『歷史學報』 139, 1993.
- 孫淑景, 『朝鮮後期 邊境地域의 武任組織과 武任集團, 그리고 이들의 正體性: 東萊地域의 사례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유현·진상원, 『조선후기 동래의 武任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1: 함중 어씨와 청주 한씨 武任 가문』, 동아대학교 ·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3.
- 이원균, 『朝鮮後期の 東萊郷班에 대하여』, 『港都釜山』 22, 2006.
- 이훈상·진상원, 『조선후기 동래 사상면의 함안 조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5.
- 鄭景柱,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에 대하여』, 『港都釜山』 10, 1994.
- 진상원, 『조선후기 동래거주 咸從 魚氏의 武任 家門으로서의 성장과 사회문화적 의의』, 『고문서연구』 41, 2012.
- _____, 『조선후기 동래 사상면 함안 조씨 가문의 가계분화와 사회지위의 차이 및 종족화의 두 방향』, 『한국민족문화』 55, 2015.
- _____, 『19세기 동래부 『사상면 호적중초』의 내용과 사상면 지역사회의 성격』, 『항도부산』 34, 2017.
- _____, 『19세기 말 民村 지역 주민들의 혼인 연망과 종족화 양상: 동래부 『沙上面 戶籍中草』의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 52, 2018.
- 진상원·박지현, 『산업화의 유산,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동아대학교 ·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4.

나. 가족과 신분 및 향촌사회 관계 등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1998.
- 김강식, 『임진왜란 전후 부산지역의 사회변화』, 『港都釜山』 22, 2006.
- 金炫榮, 『朝鮮時代の 兩班과 鄉村社會』, 集文堂, 1999.
- 安秉直·李榮薰, 『맛질의 농민들』, 一潮閣, 2001.
-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 : 신분·촌락·토지소유관계』, 혜안, 2006.

다. 향약과 향안 관계

- 姜昌龍, 「17·8世紀의 濟州鄉村 社會構造와 그 性格: 濟州 鄉案과 薦記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8, 1991.
- 金龍德, 『鄉廳研究』, 韓國研究院, 1978.
- _____, 「朝鮮後期の 地方自治; 鄉廳과 村契」, 『국사관논총』 3, 1989.
- 김 혁, 「18~19세기 鄉約의 실천과 사회관계의 변화」, 『한국문화』 66, 2014.
- 김현영, 「17세기 후반 남원향안의 작성과 罷置」, 『한국사론』 21, 1991.
- 朴翼煥, 「咸興鄉憲·鄉規考」, 『韓國史研究』 53, 1986.
- 이문현, 「1893년 전라도 순창군 팔등면 향약의 재구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일본민속학』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이광우, 「조선시대 경상도 밀양도호부 지역 향약의 변천」, 『인문연구』 37, 2015.
- _____, 「1784~1945년 경상남도 남해군 南面鄉約契의 성격」, 『한국민족문화』 56, 2015.
- 鄉村社會史研究會 편,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라. 洞契 관계

- 金龍德, 「洞契考」,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 金仁杰, 「조선후기 鄉村社會統制策의 위기; 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58, 1984.
- _____,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김필동, 「조선시대 말기의 계의 변모」, 『한국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韓國社會史研究會·문학과지성사, 1988.
- _____, 『한국사회조직사연구』, 일조각, 1992.
- 朴京夏, 「倭亂 直後の 鄉約에 대한 研究; 高坪洞 洞契를 중심으로」, 『中央史論』 5, 1987.
- 朴 焯, 「조선후기 海南地方 洞契의 一研究」, 『한국사론』 21, 1991.
- 沈義基, 「契(공동체)재산의 소유이용관계와 總有; 洞契(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11-1, 1991.
- 손병규, 「18~19세기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적 납세조직의 활동」, 『한국사학보』 65, 2016.

- 오영교, 「조선후기 洞契의 구조와 운영 ; 寧越 激僮契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 2003.
- 이규대, 「19세기의 洞契와 洞役」, 『한국 근현대이행기 사회연구』, 신서원, 2000.
- 이용기,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 128, 2017.
- 이해준, 「朝鮮後期 靈巖地方 洞契의 成立背景과 性格」, 『全南史學』 2, 1988.
- 정승모, 「朝鮮時代 鄉村社會의 變動과 農民組織」, 『역사민속학』 1, 1991.
- 鄭勝振, 「羅州 草洞洞契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大東文化研究』 54, 2006.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 계 조직과 규약의 ‘契約’적 성격」, 『고문서연구』 42, 2013.

마. 面里制 관계

- 柳承喜, 「朝鮮後期 面里制의 成立과 勸農官 및 里正의 役割」, 『典農史論』 4, 1998.
- 吳永敎, 「18세기 原州牧의 행정체제와 향촌조직의 운영」, 『韓國史研究』 104, 1999.
- _____,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해안, 2001.
-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 李羲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研究』, 集文堂, 1999.
- 임용한, 「韓末 鎭川郡의 面里구조」, 『湖西史學』 39, 2004.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 한상권,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 연구현황: 군현제·외관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8, 1995.

투고일 : 2018. 06. 11. 심사완료일 : 2018. 12. 06. 게재확정일 : 2018. 12. 14.

| Abstract |

Preliminary review for the research of elite association rolls(洞案) in Sacheon(Sasang) district (沙川面, 沙上面) of Dongraeboo(東萊府) in the late Joseon dynasty

Jin, Sang-Won

This study is a preliminary review for the study of elite association rolls in Sacheon(Sasang) district of Dongraeboo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tried to know when elite association rolls were written and then tried to solve the questions about the result. In this process, This study found out follows.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invasion of Japan, district elites established an association for friendship and mutual assistance in Sacheon district of Dongraeboo. And the other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the chief officer of Dongraepoo according to dynasty's policy and replaced the former association in 1678. And another was established in 1753 and insisted it had the legitimacy of the former association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invasion of Japan. Finally the association merged with the other and made one in 1872.

The association, established by the chief officer of Dongraeboo in 1678, had tendency to emphasize the privilege of the members and the difference of social position, while the association, established in 1753, did not have this tendency.

At last these two associations were merged into one in 1872. This unified association had not tendency to emphasize the privilege of the

members and the difference of social position and it was more opened to new members.

Key Words : District Elite, District Elite Association(洞契), District Elite Association roll(洞案), military officer(武任), common people district, Donraeboo(東萊府), Sacheon district(沙川面), Sasang district(沙上面)

